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
3. 주요골자

가. 조직(안 제4조)

-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(개인, 단체)으로 구성
- 동·단체 단위 방재단 구성(동·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를 둠)

나. 직무 등(안 제5조)

- 단장, 부단장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

다. 지역자율방재 협의회(안 제7조)

- 단장, 동대표, 단체대표, 전문가로 구성
 - ▷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
 - ▷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,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 요청

라. 임무(안 제8조)

-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
 - ▷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 활동
 - ▷ 재난 예방·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, 이재민 구호, 전염병 방재활동 지원 등

마. 운영 등(안 제10조)

-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
 - ▷ 식대, 여비, 유류대 등 필수 경비, 임무 수행 중 사고대비 보험가입비, 피복비, 체육행사비, 교육훈련비 등

바. 교육·훈련(안 제13조·안14조)

-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 원칙, 구청장은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교육은 연 2회 8시간 이상,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.

사. 중앙지원단 자문(안 제15조)

-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,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건은

- 지역단위 방재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사회참여의식을 함양하고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관민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
- 각종 재해, 재난으로부터 자율 방재기능 확보와 예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전 예찰과 응급복구 등 피해 최소화는 물론 자율 방재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한다고 사료되며
- 특히 서구, 남구 등 7개구에서는 기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중구, 동구, 기장군 등 9개 구.군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등 진행 중에 있음
-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운영, 임무,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□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